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3호).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생 략)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u> 운영 사업</u>	
<u>3.</u> ~ <u>4.</u> (생 략)	<u>4.</u> ~ <u>5.</u> (현행과 같음)	

관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고
1	sat in why	18 Wash	
2	3476	3687	
3	7n525	26	
4	A Hot	A)	
5	7 11%	Mu	
6	% 01 S	600 6	
7	对加图	chi	
8	el 2/2	Ohn	
9	2913	W.	
10	女 公安	pour	
11	o wolky		
12			
13			
14			
15			